

—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5월 18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5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5월 25일

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,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함(안 제2조, 제4조 내지 제7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, 제15조 내지 제26조)
- 나.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㎡까지 감면되던 것을 149㎡로 확대하고, 매입임대의 경우 85㎡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(안 제11조)

다.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,000분의 3에서 1,000분의 1.5로 변경함(안 제14조)

라.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.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7조·제9조·제180조·제181조·제188조, 「임대주택법」 제2조·제12조,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,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,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
- 경상북도 재정과-1703(2005. 1.27)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
- 경상북도 재정과-6028(2005. 4.28)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택 환

-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규정은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